



목 포 시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57호 2020. 9. 14.(월)

공 고

-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9
-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0
- 삼학도공원 폐선 직권 처리 제거 공고----- 46

고 시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47

회람							
----	--	--	--	--	--	--	--

목포시 목포자연사박물관 공고 제2020 - 1호

입 법 예 고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14.

목 포 시 장

I 추진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II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6개 법령에서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 · 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감면대상자를 정비하여 국가·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

Ⅲ 주요내용

1. 제7조(무료관람)제1항제2호 ~ 제1항제5호, 제1항제14호 정비
2. 제7조(무료관람)제1항제15호, 제16호, 제17호 신설
 - 관련 법에 의한 보훈관계 대상자 추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른 등록포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Ⅳ 개정 조례안 등

1. 개정 조례안 : 불 입

2.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10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15조의4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3.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감사실) : 해당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4. 예산상황 : 해당없음**5. 입법예고 : 2020. 9. 14. ~ 10. 5. (21일 이상)****6.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V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 : ‘20. 9. 14. ~ 10. 5. (21일 이상)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0 ~ 11월 <입법예고 후 수시>
- 제362회 정례회 제출 : ‘20. 11월
- 공포 및 시행 : ‘20. 12월

붙임. 목포자연사 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VI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목포자연사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99, 전남 목포시 남농로 135(용해동) 목포자연사박물관

다. 제출 방법 : 우편, 팩스(061-270-8298), 직접방문 등

VII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조례(안) >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제38조 앞에 “제7장 교육·홍보활동”을 삭제한다.

제38조 앞에 “제6장 교육·홍보활동”을 삽입한다.

제41조 앞에 “제8장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을 삭제한다.

제41조 앞에 “제7장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을 삽입한다.

제43조 앞에 “제9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43조 앞에 “제8장 보 칙”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무료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무료관람)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등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6. ~ 13. (생략)	6. ~ 13. (현행과 같음)
14. 「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1항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7장 교육 · 홍보활동

<삽 입>

제8장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삽 입>

제9장 보 칙

<삽 입>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6장 교육 · 홍보활동

<삭 제>

제7장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삭 제>

제8장 보 칙

참고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상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국·공립공원	100분의 100
3.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국·공립수목원	100분의 100
7.국·공립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사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사상자. 다만, 의사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사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사상자의 의사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제18조제3항 관련)

시설의 종류	요금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는 제외한다)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용증“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0조의3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 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1의2. “국군포로 유해”란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귀환포로”라 함은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한다.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억류기간”이라 함은 국군포로가 된 날부터 억류지를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날까지를 말한다.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
6. “신상정보”란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연령·출신 지역 등에 의하여 특정한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임을 알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국군포로나 그 가족임을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 (제16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목포자연사박물관 공고 제2020 - 2호

입 법 예 고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14.

목 포 시 장

I 추진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II 개정이유

- 일반 공중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임시휴관일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6개 법령에서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감면대상자를 정비하여 국가·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
- 조례 전반에 걸쳐 사용된 한자 표현을 알기 쉬운 한글로 변경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1. 제3조(휴관)제1항제3호 신설
 - 임시휴관일 규정 추가
2. 제6조(무료관람)제1항제2호 ~ 제1항제5호, 제1항제14호 정비
3. 제6조(무료관람)제1항제15호, 제16호, 제17호 신설
 - 관련 법에 의한 보훈관계 대상자 추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른 등록포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알기 쉬운 한글표현으로 변경
 -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Ⅳ 개정 조례안 등

1. 개정 조례안 : 불 입
2.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10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15조의4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3.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감사실) : 해당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4. 예산사항 : 해당없음

5. 입법예고 : 2020. 9. 14. ~ 10. 5. (21일 이상)

6.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V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 : ‘20. 9. 14. ~ 10. 5. (21일 이상)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0 ~ 11월 <입법예고 후 수시>
- 제362회 정례회 제출 : ‘20. 11월
- 공포 및 시행 : ‘20. 12월

Ⅵ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목포자연사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99, 전남 목포시 남농로 135(용해동) 목포자연사박물관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8298), 직접방문 등

Ⅶ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개정조례(안)>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제4조제1항 본문 중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를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마일리지증 소지자”를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수행자”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같은 항 제8호 중 “출입하는 자”를 “출입하는 사람”으로, 같은 항 제10호 중 “기여한 자”를 “기여한 사람”으로, 같은 항 제13호 중 “참여한 자로서”를 “참여한 사람으로서”로, “제출한 자”를 “제출한 사람”으로 한다. 같은 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관자로”를 “대관한 사람으로”으로 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제7조제1호 중 “만취자”를 “만취한 사람”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소지한 자”를 “소지한 사람”으로, 같은 조 제5호 중 “방해하는 자”를 “방해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음주”를 “음주, 흡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위를 한 자”를 “행위를 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오손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오손한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입체영상관의 이용자”를 “입체영상관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 앞에 “제4장 교육·홍보활동”을 삭제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교육·홍보활동”을 삽입한다.

제12조제2항 중 “교육 참여자”를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3조 앞에 “제5장 자원봉사자 및 도슨트 모집 및 운용”을 삭제한다.

제13조 앞에 “제4장 자원봉사자 및 도슨트 모집 및 운용”을 삽입한다.

제15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5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휴관) ①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략) <u><신설></u>	제3조(휴관)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u>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u>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시장은 과학관의 <u>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u> 에게 관람권을 발행하되 관람시간 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6월 1일부터 8월말까 지는 토요일 및 공휴일은 1시간 연장 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 ----- <u>관람하고자 하는 사람</u>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관람료) ① 과학관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u>자</u> 는 관람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 사 <u>마일리지증 소지자</u> 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 정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제시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관람료) ① ----- ----- <u>사람은</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u>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u> ----- ----- -----. -----.
제6조(무료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제6조(무료관람)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등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6.·7. (생략)

8.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9. (생략)

10. 전시물 기증 등 과학관 발전에 기여한 자

11.·12. (생략)

13.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

-----.

1. ----- 수행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6.·7. (현행과 같음)

8. ----- 사람

9. (현행과 같음)

10. -----
-- 사람

11.·12. (현행과 같음)

13. -----

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

14. 「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만취자

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 사람으로서 -----

----- 제출한 사람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② -----

----- 대관한 사람으로 -----

제7조(관람의 금지) -----

1. 술에 취한 사람

2. -----

----- 사람

3. 삭 제

4. (생 략)

5.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
서 유지를 방해하는 자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과학관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 4.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변상 및 손해배상) ① 시장은 과학관내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요된 제반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0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체영상관의 이용자에게는 과학관 관람료와 별도로 별표2과 같이 이

4. (현행과 같음)

5. -----
-----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① -----

-----.

1. 음주, 흡연 -----

2. ~ 4. (현행과 같음)

② -----
----- 사람-----
-----.

제9조(변상 및 손해배상) ① -----

----- 사람-----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입체영상관을 이용하는 사람-----

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는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4장 교육·홍보활동

<신 설>

제12조(교육프로그램의 운영) ① (생 략)

② 시장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교육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자원봉사자 및 도슨트 모집

및 운용

<삽 입>

제6장 보칙

<삽 입>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장 교육·홍보활동

제12조(교육프로그램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

<삭 제>

제4장 자원봉사자 및 도슨트 모집

및 운용

<삭 제>

제5장 보칙

참고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상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국·공립공원	100분의 100
3.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국·공립수목원	100분의 100
7.국·공립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사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사상자. 다만, 의사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사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사상자의 의사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제18조제3항 관련)

시설의 종류	요금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는 제외한다)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용증”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0조의3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의2. “국군포로 유해“란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귀환포로“라 함은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한다.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억류기간“이라 함은 국군포로가 된 날부터 억류지를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날까지를 말한다.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

6. “신상정보“란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연령·출신지역 등에 의하여 특정한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임을 알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국군포로나 그 가족임을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6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목포시 공고 제 2020-1420호

입 법 예 고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14.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무료대상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보훈관련 대상자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 목포근대역사관 관람 취소 시 기 납부한 관람료 반환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

2. 주요 내용

- 제5조(관람료) 제4항 신설
 - 목포근대역사관 관람 취소 시, 기 납부한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
- 제6조(무료관람) 제1항 제15호, 16호, 17호 신설
 - **누락된 보훈관계 대상자 추가**
 - **개정후**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른 등록 포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개정 시행규칙(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관계법령 : 해당없음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 평가(감사실) : 해당없음

○ 성별영향 분석 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7.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 해당없음

8. 예산사항 : 해당 없음

9. 입법예고

○ 기 간 : 2020. 9. 14. ~ 2020. 10. 4. <21일>

10.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도시문화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보내실 곳 : [우58724]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트윈스타행정타운 5층 도시문화재과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도시문화재과(☎ 061-270-8719, FAX 270-82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2020-1420호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관람 전 관람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관람료) ① ~ ③ (생략) <u><신설></u>	제5조(관람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시장은 관람 전 관람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u>
제6조(무료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등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6. ~ 13. (생략) 14. 「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제6조(무료관람)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 13. (현행과 같음)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u>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u> <u>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u> <u>(배우자, 부모, 자녀)</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② (생 략)	<u>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u> <u>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사람</u> 15.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u> <u>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u>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사람</u> 16. 「<u>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u> <u>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u> <u>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u> 17. 「<u>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u> <u>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u> <u>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u> <u>억류지출신 포로가족</u> ② (현행과 같음)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공고 제2020 - 1429호

폐선 직권처리 제거 공고

폐선의 위치	삼학도 성광조선(주) 옆(인도)			
폐선의 제원 (FRP선)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선 적 항	미상	톤	1.5톤급
	주요치수	길이(5.0m), 너비(1.5m), 깊이(1.0m)		
폐선의 관리청	목포시청		관리번호	제2020-01호
직권제거 예정 일자	2020. 10. 5 일 (공고 이후)			
제거 방법	직권 제거			
공매 장소 및 일시	-			
입찰보증금	-			

폐선의 상태
(사진 전경)

위 선박은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삼학도공원의 방문객에게 안전 및 경관 저해가 현저하므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49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직권으로 제거코자 공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2020년 10월 05일까지 목포시청 공원녹지과(전화061-270-823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직권으로 제거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9 월 14 일

목 포 시 장

(담당자 : 최 양 선, 전화번호 : 061-270-8237)

목포시 고시 제2020 - 25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 「주택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사항을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소공원(123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3. 같은 법 제32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 9. 14.

목 포 시 장

1. 사 업 명 : 목포석현지역주택조합 아파트
2. 사업주체
 - 성 명 : 목포석현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송용도 외 1인
 -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140번길 1
3. 사업승인 개요
 - 위 치 : 목포시 석현동 850번지 일원
 - 규 모 : 1,186세대, 12동, 지하1/지상22층, 연면적 149,164.435㎡
 - 공급유형 : 조합원 분양 및 일반분양
4. 사업계획(변경) 승인일 : 2020. 9. 9.
5. 착공일자 : 2017. 11. 10.
6. 준공예정일자 : 2020. 9. 30.
7.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면적	건축면적 10,581.023㎡ 연 면 적 149,072.813㎡	건축면적 10,581.023㎡ 연 면 적 149,164.435㎡
건폐율/용적률	건폐율 19.51% / 용적률 215.15%	건폐율 19.49% / 용적률 214.88%

8. 기 타

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주택법」 제19조에 의거 다른 법률 의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9. 「주택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에 따른 고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 붙임1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붙임2

[붙임1]

목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석현동 지구단위계획구역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5	석현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목포시 석현동 850번지 일원	70,840	증)291	71,131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15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 기정 : 70,840㎡ → 변경 : 71,131㎡(증 291㎡) - 도면표시번호 변경 - 기정 : 1 → 변경 : 15	- 지적현황 측량 및 기반시설 변경 반영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도면표시번호 중복에 따른 변경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0,840	증)291	71,131	100.0	
주 거 지 역		70,840	증)291	71,131	100.0	
	제 1 종 일반주거지역	11,739	증)222.2	11,961.2	16.8	
	제 2 종 일반주거지역	59,101	증)68.8	59,169.8	83.2	

(2)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석현동 798-2번지 일원	-	제1종일반 주거지역	222.2	200% 이하	• 기반시설 변경 반영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 면적 증가
-	석현동 850번지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68.8	220% 이하	• 지적 현황 측량에 따른 가구 및 획지면적 변 경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면적 증가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종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69	15~17	집산 도로	740 (445)	대1-9 석현동 1000전	대1-1 석현동 940-2전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2010-89호 (2010.4.5)	
기정	소로	1	124	10	국지 도로	442 (152)	대1-1 석현동 502-1답	소2-208 석현동 833-1도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1977-68호 (1977.3.30)	
변경	소로	1	124	10~11	국지 도로	442 (152)	대1-1 석현동 502-1답	소2-208 석현동 833-1도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1977-68호 (1977.3.30)	
기정	소로	2	22	8	국지 도로	110	소1-124 석현동 777-2답	영산초등 학교계 석현동 894-4임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1987-80호 (1987.6.5)	
기정	소로	2	208	8~10	국지 도로	428 (278)	중2-69 석현동 866-10전	대1-6 석현동 969대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1977-68호 (1977.3.30)	
변경	소로	2	208	8~10	국지 도로	428 (278)	중2-69 석현동 866-10전	중1-26 석현동 812-4도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1977-68호 (1977.3.30)	
기정	소로	2	610	8	국지 도로	135	소2-22 석현동 892대	중2-69 석현동 900-2전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2010-89호 (2010.4.5)	

주 : ()는 지구 내 연장임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1-124	소로 1-124	•도로 폭원변경 - 폭원 : 10m → 10~11m, (증) 1m	•공사여건 반영에 따른 도로 폭원 변경 ※ 보강토 옹벽 높이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을 위 한 경사도 확보
소로 2-208	소로 2-208	•중점 위치 변경 - 대1-6 석현동 969대 → 중1-26 석현동 812-4도	•기재오류에 따른 중점명 위치 변경

(2) 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23	공원	소공원	석현동 893전 일원	4,215	증)21.2	4,236.2	목포고시 제2017-138호 (2017.7.24.)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23	소공원	- 면적 증가 - 면적 : 4,215㎡ → 4,236.2㎡ (증 21.2㎡)	•지적현황 측량에 따른 소공원 면적변경 ※ 구역계 변경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k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기정	3	수도공급설비 (광역상수도)	석현동 940-2전	석현동 산66-1임	중로 2-69호선	0.742 (0.445)	2,722 (1,598)	목포시 고시 제2018-148호 (2018.10.12.)	중로 2-69호선 중복결정

주 : ()는 지구 내 연장임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A-1	A-1	54,229	54,297.8	목포시 석현동 850번지 일원	54,229	증)68.8	54,297.8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1	목포시 석현동 850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제13호 부대시설, 제14호 복리시설
			불허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220% 이하	
		높 이	• 22층 이하	
		배 치	• 채광, 일조, 쾌적성을 감안한 향 배치	
		형 태	• 지붕 : 주변환경과의 조화와 심미성 증진을 위하여 조형적 형태의 지붕 권장 • 담장 :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투시형 담장 및 조경 담장 계획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에 관한계획,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에 관한 계획 이외의 사항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의 승인내용을 준수
- 차량의 진·출입은 결정도면에 표시된 부분만 허용

3. 도시계획시설(소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변경 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기정	-	4,215.0	-	-	건폐율 : 0.00%
	변경	-	4,236.2	-	-	건폐율 : 0.00%
시 설 소 계	기정	-	837.2	-	-	시설율 : 19.86%
	변경	-	837.2	-	-	시설율 : 19.76%
도 로 / 광 장	기정	도로 및 광장	720.4	-	-	
휴 양 시 설	기정	팔각정자 외 1종	-	-	-	
운 동 시 설	기정	체력단련장 외 1종	116.8	-	-	
관 리 시 설	기정	문화재안내판 외 1종	-	-	-	
그 밖 의 시 설	기정	지석묘 외 1종	-	-	-	
녹 지	기정	-	3,377.8	-	-	녹지율 : 80.14%
	변경	-	3,399.0	-	-	녹지율 : 80.24%

나. 시설조서

시설 구분	변경 구분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규모 수량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합	계	-	4,215.0	-	-	31개소	
	변경	합	계	-	4,236.2	-	-	31개소	
	기정	시 설 소 계	-	-	837.2	-	-	31개소	
	변경	시 설 소 계	-	-	837.2	-	-	31개소	
도로 및 광장	기정	소 계	-	-	720.4	-	-		
	기정	- 도	로	전 지 역	562.2	-	-		6개노선
	기정	가 광	장	전 지 역	158.2	-	-		
	기정	가-1	광 장 - 1	788-11대	68.9	-	-		
	기정	가-2	광 장 - 2	892대	89.3	-	-		
	기정	소 계	-	-	-	-	-	17개소	
	기정	①	팔 각 정 자	녹지 내	-	-	-	1개소	
	기정	②	벤 치	전 지 역	-	-	-	16개소	
휴양 시설	기정	소 계	-	-	116.8	-	-	6개소	
	기정	나	체 력 단 련 장	890-3전	116.8	-	-		
	기정	③	체력단련시설	체력단련장 내	-	-	-	6개소	
	기정	소 계	-	-	-	-	-	3개소	
관리 시설	기정	④	문화재안내판	녹지 내	-	-	-	1개소	
	기정	⑤	종 합 안 내 판	녹지 내	-	-	-	2개소	
	기정	소 계	-	-	-	-	-	5개소	
그밖의 시설	기정	⑥	지 석 묘	녹지 내	-	-	-	4개소	
	기정	⑦	석 관 묘	녹지 내	-	-	-	1개소	
	기정	소 계	-	-	-	-	-		
녹 지	기정	-	녹 지	전 지 역	3,377.8	-	-		
	변경	-	녹 지	전 지 역	3,399.0	-	-		

다. 도로조서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중 점	비고
기정	합 계				-	562.2	-	-	-	-
기정	소로	소 계			-	562.2	-	-	-	-
기정	소로	3류	1	2.0	119.1	240.8	진입로	남동측 공원경계	체력단련장	
기정			2	2.0	47.1	98.7	시설연결로	광장-2	소로3-1	
기정			3	1.5	30.4	49.3	시설연결로	소로3-1	체력단련장	
기정			4	1.5	43.6	70.5	시설연결로	소로3-1	소로3-6	
기정			5	1.5	17.7	30.6	시설연결로	소로3-2	소로3-4	
기정			6	1.5	48.2	72.3	시설연결로	광장-2	광장-2	

■ 도룡 지구단위계획구역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2	도룡 지구단위계획구역	목포시 카톨릭대학 일원	136,341	증)2	136,343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12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 기정: 136,341㎡ → 변경: 136,343㎡(증 2㎡) - 도면표시번호 변경 - 기정: 10 → 변경: 12	- 석현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필지 편입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도면표시번호 중복에 따른 변경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36,341	증)2	136,343	100.0	
주 거 지 역		134,684	증)2	134,686	98.8	
	제 1 종 일반주거지역	101,354	증)2	101,356	74.3	
	제 2 종 일반주거지역	33,330	-	33,330	24.5	
자 연 녹 지 지 역		1,657	-	1,657	1.2	

(2)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석현동 902번지 일원	-	제1종일반 주거지역	2	200% 이하	석현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필지 편입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부 편입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종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69	17	집산 도로	750 (305)	대1-9 석현동 1000전	대1-1 석현동 940-2전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2010-89호 (2010.4.5)	
기정	중로	3	97	12~15	국지 도로	192	대1-9 석현동 967-11임	중2-69 석현동 866전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1977-68호 (1977.3.30)	
기정	소로	2	609	8	국지 도로	138	소2-323 석현동 860-1전	중2-69 석현동 1006-1전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2010-89호 (2010.4.5)	
기정	소로	2	614	8	국지 도로	97	중2-69 석현동 1031-20구	석현동 907-4전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2010-89호 (2010.4.5)	
기정	소로	3	395	6	국지 도로	200	중3-97 석현동 1031-17구	석현동 977-39도	일반 도로	-	목포시고시 제2014-29호 (2014.2.13)	

주 : ()는 지구 내 연장임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76	주차장	석현동 985전 일원	491	-	491	목포시고시 제2019-162호 (2019.8.19)	
기정	77	주차장	석현동 902전 일원	1,366	-	1,366	전남고시 제2010-89호 (2010.4.5)	

(2) 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22	공원	소공원	석현동 969-2대 일원	1,155	-	1,155	목포시고시 제2019-162호 (2019.8.19)	

(3) 유통 및 공급시설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k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기정	3	수도공급설비 (광역상수도)	석현동 940-2 전	석현동 산66-1 임	중로 2-69호선	0.742 (0.239)	2,722 (834)	목포시 고시 제2018-148호 (2018.10.12.)	중로 2-69호선 중복결정

주 : ()는 지구 내 연장임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9	학교	카톨릭 대학교	석현동 894-1 일원	20,792 (15,254)	-	20,792 (15,254)	전남고시 제1998-120호 (1998.6.16.)	

주 : ()는 지구 내 연장임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A1	A1	557	석현동 1001-1전 일원	557	자율적 공동개발권장
A2	A2	22,199	석현동 982-11전 일원	22,199	
A3	A3	13,546	석현동 984주 일원	13,546	
A4	A4	5,386	석현동 1008전 일원	5,386	
A5	A5	15,072	석현동 909-1전 일원	15,072	
A6	A6	15,837	석현동 912답 일원	15,837	
B1	B1	30,520	석현동 986-2전 일원	30,520	-

자율적
공동개발권장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A1~A6	용도	허용 용도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권장 용도	•공동주택	
			불허 용도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건축물의 주방향은 일조,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하여 동향 또는 남향의 배치를 권장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맞는 방향으로 배치하도록 함	
		형 태		•지붕형태 : 평지붕을 허용하도록 하며, 이 경우 옥상층에는 물탱크 등의 부대시설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옥상녹화를 권장 •담장 및 대문 :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 친환경적인 재료 (높이 1.2m 이하) •건축물 외벽의 재료 :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 :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	
		색 채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별도의 색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type)을 사용하도록 유도	
		건축선		-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B1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제13호 부대시설, 제14호 복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 이		•24층 이하	
		배 치		•채광, 일조, 쾌적성을 감안한 향 배치	
		형 태		•지붕 : 주변환경과의 조화와 심미성 증진을 위하여 조형적 형태의 지붕 권장 •담장 :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투시형 담장 및 조경 담장 계획	

주 : 1. 공동주택으로 변경 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가능
 2. 상기 제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침도 참조

3. 도시계획시설(소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가.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변경 구분	시 설 내 용	부지면적 (㎡)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기정		1,155.0	-	-	
시설소계	기정		224.0	-	-	
도로/광장	기정	도로 및 광장	192.5	-	-	
조경시설	기정	트래리스	-	-	-	
휴양시설	기정	휴게쉼터 외 3종	31.5	-	-	
운동시설	기정	체력단련시설 6종	-	-	-	
관리시설	기정	종합안내판	-	-	-	
녹 지	기정		931.0	-	-	

나. 시설조서

시설 구분	변경 구분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규모 수량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합	계		1,155.0	-	-	22개소	
	기정	시 설 소 계			224.0	-	-	22개소	
도로 및 광장	기정	소 계			192.5	-	-		
	기정	-	도 로	전 지 역	169.0	-	-		6개 노선
	기정	가	광 장	984-1전 일원	23.5	-	-		
조경 시설	기정	소 계			-	-	-	6개소	
	기정	①	트래리스	소로 3-2 내	-	-	-	6개소	
휴양 시설	기정	소 계			31.5	-	-	9개소	
	기정	나	휴게쉼터	984-1전 일원	31.5	-	-		
	기정	②	벤 치	전 지 역	-	-	-	7개소	
	기정	③	앉음벽	광장 내	-	-	-	1개소	
	기정	④	파고라	휴게쉼터 내	-	-	-	1개소	
운동 시설	기정	소 계			-	-	-	6개소	
	기정	⑤	체력단련시설	녹지 내	-	-	-	6개소	
관리 시설	기정	소 계			-	-	-	1개소	
	기정	⑥	종합안내판	녹지 내	-	-	-	1개소	
녹 지	기정	-	녹 지	전 지 역	931.0	-	-		

다. 도로조서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합	계			-	169.0	-	-	-	-
기정	소로	소 계			-	169.0	-	-	-	-
기정	소로	3류	1	1.5	6.9	10.4	시설연결로	광 장	소로 3-2	
기정			2	1.5	78.0	118.4	진입로	북동측 경계	소로 3-2	
기정			3	1.0	21.3	21.3	시설연결로	광 장	남서측 경계	
기정			4	1.0	9.5	10.1	시설연결로	소로 3-3	소로 3-2	
기정			5	1.0	4.4	4.4	시설연결로	휴게쉼터	소로 3-2	
기정			6	1.0	4.4	4.4	시설연결로	휴게쉼터	소로 3-2	

[붙임2]

목포 도시계획시설(소공원(123호))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내용

구분 항목	고 시 내 용	비 고
1. 사업시행 위치	○ 사업위치 : 목포시 석현동 893번지 일원	변경없음
2. 사업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목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 업 명 : 123호 소공원 조성사업	변경없음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소공원 조성 : 당초 4,215.0㎡ ⇒ 변경 4,236.2㎡(증 21.2㎡) - 공원시설 : 도로 및 광장, 휴게쉼터, 체력단련장, 조경식재 등 - 매장문화재 이전복원 : 지석묘 4기, 석관묘 1기	변 경
4.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140번길 1, 3층(옥암동) ○ 성 명 : 목포석현지역주택조합(조합장 : 송용도)	변경없음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착수일 : 2019. 4. 29. ○ 준공예정일 : 당초 2020. 5. 31. ⇒ 변경 2020. 9. 30.	변 경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붙임참조 ※변경사유: 토지분할 및 지적 현황측량 반영에 따른 지적 및 편입면적 변경	변 경
7. 실시계획 관계도서	○ 관계도서 : 게재 생략(도시계획과 비치) ※변경사유: 경계석 시공계획 일부 변경	변 경
8.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서류의 열람 등) 제2항제1호(사업시행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사 업내용 변경), 제2항제2호(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의 변경) 에 해당되어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하지 아니함.	생 략
9. 기타 문의	○ 문의 전화 : 061 - 270 - 8414(목포시청 도시계획과) 061 - 270 - 8467(목포시청 건축행정과)	-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연번	토지조서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동	지 번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당초	변경										
합 계					5,194	4,236.2	4,215	4,236.2	합계는 지적 현황측량 반영면적				
1	석현	788-4	788-4	대	300	300	300	300	목포석현 지역주택조합	전남 목포시 평화로 140번길 1, 3층(옥암동)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	석현	788-5	788-19	전	508	144	150	144	목포석현 지역주택조합	전남 목포시 평화로 140번길 1, 3층(옥암동)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3	석현	788-7	788-7	도	25	10	10	10	목포석현 지역주택조합	전남 목포시 평화로 140번길 1, 3층(옥암동)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4	석현	788-9	788-9	전	330	320	320	320	목포석현 지역주택조합	전남 목포시 평화로 140번길 1, 3층(옥암동)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5	석현	788-11	788-11	대	332	332	332	332	목포석현 지역주택조합	전남 목포시 평화로 140번길 1, 3층(옥암동)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6	석현	788-14	788-14	도	6	6	6	6	목포석현 지역주택조합	전남 목포시 평화로 140번길 1, 3층(옥암동)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7	석현	788-15	788-15	도	42	42	42	42	목포석현 지역주택조합	전남 목포시 평화로 140번길 1, 3층(옥암동)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8	석현	890-1	890-5	전	807	697	701	697	목포석현 지역주택조합	전남 목포시 평화로 140번길 1, 3층(옥암동)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9	석현	890-3	890-3	전	212	212	212	212	목포석현 지역주택조합	전남 목포시 평화로 140번길 1, 3층(옥암동)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0	석현	891	891-2	대	393	198	202	198	목포석현 지역주택조합	전남 목포시 평화로 140번길 1, 3층(옥암동)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1	석현	892	892-2	대	502	202	204	202	목포석현 지역주택조합	전남 목포시 평화로 140번길 1, 3층(옥암동)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2	석현	893	893	전	1,574	1,574	1,574	1,574	목포석현 지역주택조합	전남 목포시 평화로 140번길 1, 3층(옥암동)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3	석현	894-11	894-11	임	63	63	63	63	목포석현 지역주택조합	전남 목포시 평화로 140번길 1, 3층(옥암동)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4	석현	894-16	894-16	학	100	100	99	100	목포석현 지역주택조합	전남 목포시 평화로 140번길 1, 3층(옥암동)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